제875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안 (조달청)	1.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사회적책임(가·감점) 평가항목 신설(강화) o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수행능력 심사 시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'건설안전 심사' 항목에 평가항목 신설 – 전문공사의 경우 업체 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 가·감점 (300억 이상: −0.8~+0.8점, 100~300억: −0.4~+0.4점) – 전기·정보통신·소방공사의 경우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된 업체에 대해 감점 (300억 이상: −0.8점, 100~300억: −0.4점) ▶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 [별표2], 제 [별표3]	1.비중요
2	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안 (조달청)	1.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신인도 평가항목 신설(강화) o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(이하 'PQ심사') 신인도 평가 시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"건설재해 및 제재처분" 항목에서 신인도 평가항목 신설 – 전문공사의 경우 업체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 가·감점(-1~+1점)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– 전기 · 정보통신 · 소방공사의 경우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된 업체에 대해 감점(–1점) ▶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 [별표3]	
3	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(조달청)	1.신인도 평가항목 중 사고사망만인율 감점 확대 적용 및 산업재해로 사망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평가항목 신설(강화) o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시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해 감점 확대 적용(※종전 종합공사에 대해 가점만 부여) 및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“건설재해 및 제재처분” 항목에서 신인도 평가항목 신설 – 종합 · 전문공사의 경우 업체 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 가·감점(-1~+1점) – 전기 · 정보통신 · 소방공사의 경우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된 업체에 대해 감점(–1점) ▶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 [별표1]	1.비중요
4	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 · 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(기상청)	1.적설계 형식승인 중 안정도 기준 강화(강화) o 적설계 형식승인 시험기준 및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안정도 시험 기준에 수집된 관측자료의 비율 기준 추가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– 수집된 관측자료(0~300 cm)의 개수가 총 수집 가능 관측자료 개수의 80% 이상이어야 함 ▶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·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[별표 22], [별표 23], [별표 24]	
5	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일반음식점 시설기준 및 행정처분 강화(강화) ㅇ 일반음식점 객실 내 침대, 욕실 설치 제한 규정 마련 *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에 따라 일반음식점은 객실을 설치할 수 있고, 객실의 잠금장치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▶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2.즉석판매제조·가공업자 등 거래증명서 보관 의무 및 행정처분(강화) ㅇ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당일생산·당일판매 및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 보관 의무화 *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, 제과점, 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, 위탁급식영업, 집단급식소 ㅇ 당일생산·당일판매 및 관련 증빙서류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분기준 강화 ▶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3.위탁급식영업 등 점검결과 기록·보관 및 행정처분(강화) ㅇ 위탁급식영업자가 위생관리 사항 점검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▶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	1.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6	포장재 재질 · 구조 등급표시 기준 개정안 (환경부)	1.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예외 대상에서 종이팩 포장재 삭제(강화) ㅇ 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예외 대상에서 ‘종이팩 중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’ 삭제 ▶포장재 재질・구조 등급표시 기준 제5조	1.비중요
7	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(소방청)	1.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(신설) ㅇ 지하소화장치함 도입에 따른 기준 신설 등 – 원통형 소화전함의 구조기준 명확화 – 지하소화장치함의 문 개방구조, 구조기준, 문의 조작성, 문 및 고무재료 규정 – 침지시험, 저온시험, 상부하중시험, 수납장치강도시험, 노화시험 신설 – 지하소화장치함의 표시 규정 ▶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, 제5조, 제7조, 제10조의2, 제10조의3, 제10조의4, 제10조의5, 제10조의6, 제11조	1.비중요
8	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(환경부)	1.폐기물소각시설의 과다처리 금지(신설) ㅇ 폐기물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 소각 금지 – 다만, 반입폐기물의 발열량이 설계발열량보다 낮은 경우 그 비율만큼 추가로 소각할수 있으며, 추가로 소각하는 양은 처리능력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 ▶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9	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(기상청)	1.기상예보사 · 감정사의 보수교육 미이수시의 가중처분 신설(신설) ㅇ 기상예보사 · 감정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개월 면허정지, 2차 위반 시 2개월 면허정지, 3차 위반 시 면허 취소의 가중처분을 규정 ▶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	1.비중요